



국가표준(KS) 제정방식 대폭 개편

상향식 표준제정 방식인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단체, 표준화 포럼, 타 부처 표준화 관련 기관 등 민간이 주축이 되어 KS 원안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대표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상반기 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PSDO 운영요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지정대상은 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150여개 기관·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가표준개발 수행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게 되며,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과 관련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PSDO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 전문인력 양성, PSDO "CEO 협의체" 구성·운영 및 KS 제·개정 등 표준화 추진시 PSDO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시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을 PSDO로 활용하여 KS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표준제정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국가표준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PSDO에서 개발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KS의 제정절차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현행체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관련 단체 등 수요자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인 PSDO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강화는 물론 표준수요에의 보다 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법정부 차원의 PSDO를 육성하여 국가표준의 활용·확산의 거점 및 국가·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기술표준원 정책과(02-509-7220)
유재열 과장, 범희권 서기관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운영계획

I. 추진방향

상향식 표준개발을 통한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민·관의 유기적인 기술표준 정보 Network구축-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 기반 조성

- ◆ 민간 표준화 기관의 전략적 육성
- ◆ 업종별 단체 등과 기술표준 정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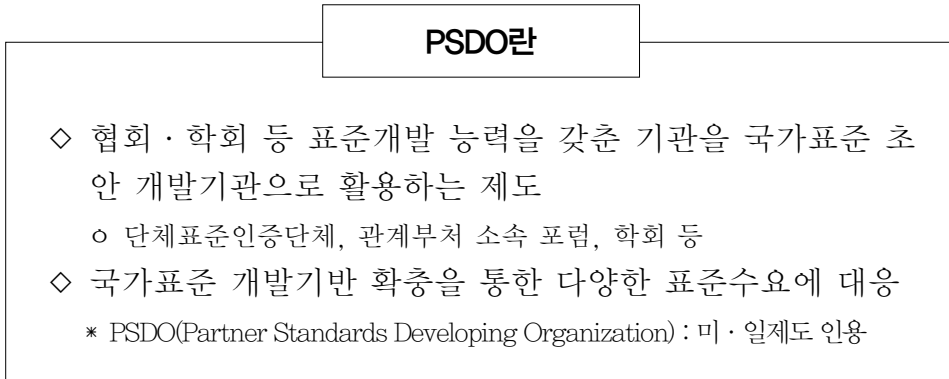
중점 이행과제

- 1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 2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원 등 내실화 기반조성
※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정보교류 촉진 등
- 3 관계부처와의 표준화 협력활동 강화
※ 국가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활동에의 참여 활성화 등



II. 중점 이행과제

1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지정·운영



□ PSDO 지정계획

〈분야〉 : 정보기술, 환경 등 25여개 분야

〈대상〉 : 표준·적합성평가 관련 150여개 기관·단체

예) 한국환경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소 등 관계부처 주관 기관·단체 우선 지정 유도

* 세부 분야별 지정기관 : 기관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능〉

○ 관련산업의 자체 표준화 수요 조사 및 국가표준(안) 개발

* 초안 작성시 표준 관련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 표준담당관 참여 가능

○ 국가표준화 추진 거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의 국내 허브 역할

* 추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시 전문위원회 기능의제 추진

○ 사실상 표준의 개발·보급

〈지정요건〉

- 산·학·연등 표준관련 전문가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사실상 표준·적합성평가 관련 실적이 있는 기관
- 국가표준 원안작성 책임자 1인 이상 보유

〈표준개발 절차 개선(안)〉



* 전문위원회 기능의제 추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

기대 효과

- ◆ 국가표준의 선진화 기반구축
 - 민·관의 기술표준 정보교류 활성화로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의 연계성 강화
- ◆ 국가표준의 시장 적합성 제고
 - 타 부처 표준화 관련단체의 국가표준 개발 참여확산 및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국가표준의 효용성 증대
- ◆ 국가표준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 기표원의 증가된 표준 정책, 안전업무 추진 여력 확보



2 PSDO 내실화 기반 조성

□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분야별 표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존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에 표준화 부문 추가
 - * 본부에서 운용중인 민간포럼 및 표준화 교육훈련 계획과도 연계
- 표준화 관련 인력 Pool 및 DB 구축·제공
- 국제표준 관련문서 투표참여 확대 등 표준화 활동 강화

□ PSDO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 범 부처차원의 표준 및 TBT 정보에 대한 지식기반 시스템 운영
 - * 표준연구회, 표준자료실, 표준포럼, 여론조사 등 표준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PSDO "CEO 협의체"구성·운영
 - *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표준제정 경험의 확산 및 정보공유 유도

□ 표준개발 촉진을 위한 예산 등 지원

- 국가표준 개발시 외부 용역을 지양하고 PSDO 활용
- 산업기술기반자금 등 표준화 관련 예산의 PSDO에 우선 배정
- KS규격판매 원가에 표준개발비용을 포함하여 개발기금 조성추진
 - * 주요국의 규격판매 가격(13p기준) : KS 5,800원, JIS 13,230원, ISO 58,770원

3 관계 부처와의 표준화 협력활동 강화

□ PSDO로의 활동권고

- 각 부처 소속 표준화 관련 기관의 참여 활성화 유도
 - * 각 부처에서 운용중인 기술기준 관련 기관의 우선 지정 추진

□ 국가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추진시 PSDO의 참여 촉진

- PSDO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한 국가표준의 효용성 증대

기술기준 제·개정시 PSDO와의 협의 내실화

-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한 규제요인 해소
 - * 국가표준개발 주체인 관계부처 소속 PSDO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가표준과의 이원화 예방
 - * 국가, 지자체 등은 KS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산업표준화법 제32조)

기표원과 PSDO 관계

- ◆ 국가표준 제·개정 등의 방향 설정
- ◆ 국가표준 개발과제 중 일부를 PSDO에 위탁
 - 기표원이 참여하여 국제표준, 정부규격 등과의 연계성 강화
- ◆ PSDO의 업무분담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조정
- ◆ 국가표준과 국제표준간의 부합화 및 기술기준의 국가표준 준수여부 검토
 - * 국가표준대표기관(National Standards Body)으로서의 역할 수행
- ◆ PSDO에서 제출한 국가표준(안)에 대해 현행 KS제정절차에 따라 표준화 추진(전문위원회 심의 생략가능)

Ⅲ. 향후 추진계획

'06.5월 : 공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06.6월 : PSDO 운영요령 공고

'06.7월 : 사전준비

- 표준기술 전문인력 Pool 및 DB 구축
- 규격판매 단가조정을 통한 개발자금 조성방안 등

'06.9월 : PSDO 시행